

고 시

남해군고시 제2020-17호

냉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일원에 추진 중인 냉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이 변경되어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 1. 20.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냉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2. 사업 목적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위치 :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냉천마을 일원
4.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찬새미 치유회관
 - 당초 : 마을회관 리모델링(A=46㎡), 이장실 증축(A=12㎡)
 - 변경 : 마을회관 리모델링(A=136.64㎡), 휴게 및 다용도실 증축(A=28.155㎡)
 - 찬새미 공동족욕탕
 - 당초 : 우물정비(화강석 판석 포장 1식, 파고라 1식)
 - 변경 : 비가림 시설(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
 - 찬새미 마실 산책로
 - 당초 : 칼라콘크리트 포장(A=448㎡)
 - 변경 : 산책로 포장(B=5.0m, L=107m)

○ 지역역량강화계획

- 홍보, 마케팅 및 주민교육

5. 총 사업비(변경없음) : 494백만원(국비 346, 지방비 148)
6. 사업기간(변경없음) : 2017년~ 2020년 5월
7.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지역개발팀, 055-860-3613)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고시 제2020-2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548 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2. 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산294-7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548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804-4, 산375-2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85-27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3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178-6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35-25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559-3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307-10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5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290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678-7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165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당남로 77-1	20090427	내금의 옛 이름을 이용. 당집(무속인들이 살던 집) 너머에 있는 마을이란 뜻임
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26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 321	20090427	동쪽의 두, 세번째 행정구역이라는 뜻으로 지어 부른 방위지명인 이동면과 삼동면을 연결하는 도로임
8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100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470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562-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375-31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758-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235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287-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348-2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999-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1567번길 74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6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659-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984번길 79-20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남양리 167-1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695번길 18	20091023	설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1458-6, 산187-1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775번길 352	20091023	설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159-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852번길 46	20100915	흥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5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058-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226	20090427	고려 충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104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대한0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소하천명	금송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1031번지, 1019번지, 1288-1번지		
	면적	9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1. 22. ~ 영구(임시 점용 : ~ 2020. 6. 30.)		
	목적 및 사유	교량설치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남해군 위원회 정비에 의거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3조 4항으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변경

나. 제4조 2항 중 “제7조에 따른 남해군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를 삭제하고, “제3조에 따라 확정된 건강도시 사업 시행에”로 변경

다. 제7조 ~ 제13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삭제”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0년 2월 12일까지(21일간)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남해군보건소 건강생활팀
- 2) 연락처 : 전화 055-860-8714, 팩스 055-860-879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보건소 건강생활팀(☎ 055-860-8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4항으로 “군수는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남해군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로 한다.

제4조 2항 중 “제7조에 따른 남해군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 계획의 시행에” 를 삭제하고, “제3조에 따라 확정된 건강도시 사업 시행에” 로 한다.

제7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삭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삭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삭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삭제 한다.

제11조 (회의)에 관한 사항은 삭제 한다.

제12조 (간사)에 관한 사항은 삭제 한다.

제13조 (수당)에 관한 사항은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계획) ① ~ ③ (생 략)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군수는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남해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u>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② <u>군수는 제7조에 따른 남해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3조에 따라 확정된 건강도시 사업 시행에 -----</u> ----- -----.
제7조(건강도시운영위원회) ① <u>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u> ② ~ ④ (생 략)	제7조 <삭 제>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 4. (생 략)	제8조 <삭 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u> 1. ~ 3. (생 략)	제9조 <삭 제>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② (생 략)	제10조 <삭 제>
제11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제11조 <삭 제>

현행	개정안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 <삭 제>
제13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삭 제>

남해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2. 제정이유

○ 남해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 「남해군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보완하여 행정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등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안 제4조)
- 나. 출장경과 보고서의 공개 철저(안 제8조)
- 다. 출장경비 환수규정 마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2월 12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34,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전화 055-860-3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남해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남해군수(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가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3.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4.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 업무는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심사) 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무국외출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무국외출장계획은 기존자료 활용 및 중복출장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사전에 공무국외출장 담당팀장, 담당부서장, 행정과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중점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현지 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예정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 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간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전자항공권(E-ticket) 등 국외출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 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그 공무국외출장자의 향후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 지급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경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3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경관 조례안

2. 개정이유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심의대상 공공건축물, 경관조명, 제2호에 해당하는 심의대상 일반건축물 신설(안 제26조)
-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 경관계획 수립 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각종 경관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및 지정(안 제31조)
-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도로시설 사업, 50억원 이상 하천 시설 사업,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 높이 10m이상인 상징조형물,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별표1에서 정한 자문대상 신축 건축물(안 제32조)

○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의 시기

- 심의 :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기본설계 완료 전,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또는 변경허가 전
- 자문 : 기본설계 완료 전,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대상은 착공신고 전, 일반건축물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전(안 제33조)

○ 별지 제2호 서식 경관 심의 자문신청서에서 자문대상의 경우 건축허가(신고) 등 인허가 구비서류로 한정하고 색채, 형태 등 자문을 위한 내용 파악이 불가할 때는 도면에 추가 표기가능 : 과도한 심의자료 작성에 따른 경비 부담 경감(별지 제2호 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073, 팩스 860-3739, e-mail : n0820711@korea.kr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도시디자인팀(860-3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경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군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디자인”이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도시공간·건축물 등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자연적 요소와 인공 시설물(이하 “도시경관

요소”라 한다)에 대한 형태·윤곽·색채·소재·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을 고려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요소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8. “야간경관”이란 야간에 관광지 주변, 도심거리, 교량, 마을길 등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빛에 대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군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관계획의 수립권자로서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7조에 따라 군수는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기본계획, 경상남도의 경관계획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지형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수립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접수한 제안서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역 또는 권역별·분야별 경관가이드라인

나.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다.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라.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마.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역사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경관지구, 미관지구,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장 경관사업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①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법 제16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 관련 사업

2.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4. 특정공간의 특화 시범사업

5.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6. 도시구조물,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7.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

8.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9.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사업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경관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군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⑨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하는 경관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 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구역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운영규정 등 경관협정 체결자 합의사항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체결자 지위승계 신고)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승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2. 경관협정 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③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 관련 도서
-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2호나목, 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설물로 총사업비가 50억 이상인 사업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연면적 산출 시 지하층 연면적은 제외한다.

1. 별표 1 제1호의 심의대상 신축 공공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설치 및 연출되는 경관조명.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에 따라 설계공모방식을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별표 1 제2호의 심의대상 신축 일반건축물

제6장 경관위원회

제27조(경관위원회 설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는 영 제25조에 따라 구성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9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영 제26조에 따라 운영한다.

- ②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소위원회는 심의·자문을 수행할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준용한다.

제31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각종 경관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2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경관위원회의 자문사항으로서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도로시설 사업
3.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색채에 관한 사항
5. 높이 10m이상인 상징조형물의 형태, 야간경관, 색채 등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7. 별표 1에 따른 자문대상 건축물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3조(심의 및 자문의 시기 등) ① 경관위원회 등의 경관디자인 심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기반시설사업: 기본설계 완료 전(다만, 경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2. 건축물: 건축허가 전 또는 변경허가 전

② 경관위원회 등의 경관디자인 자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제5호에서 제7호([별표1] 제2호 제외)까지의 자문대상: 기본설계 완료 전(다만, 경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2. 제32조제4호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색채에 관한 사항: 착공 신고 전

3. 별표 1 제2호의 자문대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전

③ 경관위원회는 심의, 자문 안전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주청 및 사업주관 부서의 장 또는 설계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경관 사전 검토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경관디자인 심의·자문 도서
4. 심의·자문 도서의 제안 설명용 출력물 및 CD

④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공동위원회의 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남해군 공동위원회 심의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심의도서의 설명용 출력물 및 CD

제35조(수당 등) ① 경관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실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경관디자인 협의) ① 군의 각 부서의 장은 경관디자인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관디자인 협의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이미지 형성사업, 공공시각 전달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이외의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3.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다른 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4. 15층 이상 공동주택의 외부 채도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자인의 개선이나 협이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2.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설치하는 경우: 디자인 선정 전
3. 디자인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④ 군수와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경관 및 디자인관련 사업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축물 경관심의·자문 대상
(제26조제1호 및 제2호, 제32조제7호 관련)

구 분	건축물의 경관심의·자문대상	예 시	심의대상 규모	자문대상 규모
1. 공 공 건축물	공공청사	군청,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연면적 1,000㎡ 이상	연면적 100㎡ 이상 ~ 1,000㎡ 미만
	군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도서관, 복지회관, 예술회관, 박물관 등		
	군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여객선터미널,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등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소방서, 우체국 등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		
	화장시설	화장장, 납골당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일 반 건축물	① 도시계획도로 또는 군도, 농어촌도로로부터 300m 이내 건축하는 건축물 (단, 도시지역은 5층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
	② 해안변으로부터 200m 이내 건축하는 건축물 (단, 부속건축물, 창고, 축사 제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연면적 200㎡ 이상 ~ 1,000㎡ 미만
	③ 독일마을 경계로부터 1km 이내 건축하는 건축물, 가천다랭이 마을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건축하는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 1,000㎡ 미만
	※ “연면적” 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남해군 공동위원회 [] 심의 []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건축종별	[] 신축	[] 증축	[] 대수선	[] 기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여부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성별(남, 여)
	전자우편 송달 동의	(전화번호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최고높이		㎡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세대수/동수	세대	동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기계식	대 ㎡	대 ㎡	대 ㎡	대
건축기준 완화내용	관계법령				
	신청사유				

변경내용	
------	--

「남해군 경관 조례」 제34조제7항제1호에 따라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

【관련 법령】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시·군·구·행정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은 해당 시·도의 경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군·구·행정시·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 내용과 시·도의 경관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시·도의 경관계획이 우선한다.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 ④ 경관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경관사업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4장 경관협정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1. 건축물의 의장(意匠)·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에서 같다)·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명칭과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시·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 심의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변 지역의 경관 현황에 관한 사항

3.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경관위원회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관법시행령」

-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행정시장
 4.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역시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도지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의 수립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도지사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2.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경관계획
3. 주변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축물소유자
2.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지, 가로, 수변공간(水邊空間)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樹木)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해당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도지사 등에게 한다.

1.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는 제외한다)·군·행정시·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행정시장·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등에 걸쳐 있는 경우 또는 시·군등과 경제자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속한 각각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관협정을 인가한 시·도지사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3.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이하 이 호에서 "기본설계"라 한다)를 완료하기 전에 마칠 것.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다.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의 경우: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③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도시·조경·환경 등 경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며, 3명 이상이 경관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것

2.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이 경우 2)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한다.

1) 발주청에서 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가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중 "경관위원회"는 "발주청에서 구성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제25조제4항 중 "제2항제3호"는 "가목2)"로 본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법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도의 지방의회를 말한다)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 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
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
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0-155호

남해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남해군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 2. 6.

남 해 군 수

1. 공람기간 : 신문 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2. 관련도면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3)
3. 남해군관리계획(장사시설: 자연장지) 결정(변경) 조서: 붙임참조
4. 의견 제출 방법
 - 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남해군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263	중로 2-1	아산리 150-4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소로 3-A호선	○노선 신설 - 연장 : 263m - 폭원 : 6m	○사회복지시설 결정에 따른 진입도로 신설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사회복지시설	남해읍 아산리 150번지 일원	-	증) 7,360	7,360	-	

■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결정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20% 이하	100% 이하	3층 이하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설 - 면적 : 7,360m ²	○노인인구 증대에 따라 남해군 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남해군의 부족한 복지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금회 군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고자 함.